

2023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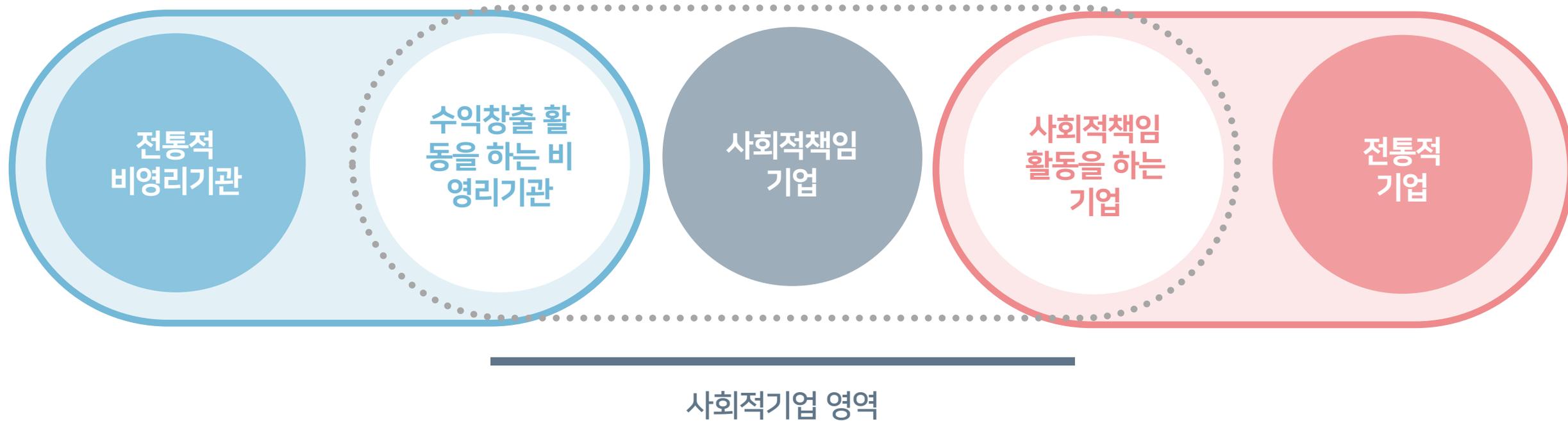
Contents



- 01 (예비)사회적기업의 이해
- 02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자격
- 03 심사내용 및 절차
- 04 구비서류 준비 방법
- 05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방법
- 06 접수기간 및 문의

01

(예비)사회적기업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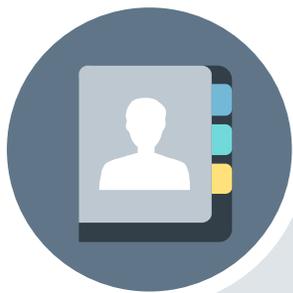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2조 제 1항」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을 노동 시장으로 통합
-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 확충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 공공서비스 혁신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 통합
-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



윤리적 시장 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 문화 확산
- 착한 소비 문화 조성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한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지역형, 부처형 중복 지정 불가)

사회적기업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사회적 목적 실현
(신청 직전 6개월간 실적을 통해 확인)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6.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7.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예비 사회적기업

1. 조직형태
2. 일자리제공형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필요
3. 사회적 목적 실현
(정관이나 사업계획서를 통해 확인)
4. -
5.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6.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7.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요건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 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정 기간

3년

단,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02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자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사회적기업 진입 가능 조직 형태 예시 * 개인사업자,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출연 조직 불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사회복지법인

영농(어)조합 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유의사항

신청 기업 대표자가 기존 사회적 기업 대표자와 동일,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실질적인 독립성 여부는 위원회에서 판단.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혼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 예비사회적기업: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판단(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각 유형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며, 이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사회서비스제공형 필수 요건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text{취약계층 수혜 비율} = \frac{\text{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자 수}}{\text{전체(일반인+취약계층)사회서비스 수혜자 수}} \times 100$$

■ 실적 증빙 유의 사항

사회서비스제공 실적의 판단 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공(연)인원, 시간, 횟수 등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일관된 증빙 단위로 실적을 제출해야 함.
수혜자 개인별로 취약계층 여부 확인 및 증빙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수혜자가 속해 있는 기관이나 연계 기관을 통해 확인.

■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인정 유의 사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바우처 제공 실적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포함.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

홍성우리마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어르신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고령자 대상 건강교실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



지난 8월 25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마을활력소 건물에서 홍성 우리동네의원 물리치료사 민트씨(왼쪽)가 지역 주민들 앞에서 스트레칭 시범을 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 발바닥 감각이 떨어지면 잘 넘어지게 돼요. 감각이 더 떨어지는 쪽 발을 더 꼭 눌러보세요.”

지난 8월 25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마을활력소 건물, 물리치료사 민트씨(활동명)의 시범을 따라 동네 어르신 5명이 발바닥으로 고무공을 누른다. 발끝에 수건을 걸어 뒤통으로 잡아당기고, 넘어질세라 조심조심 의자를 잡고 스쿼트도 한다. 쪼그려 앉아 발일을 하느라 하체가 좋지 못한 노인을 위한 스트레칭 수업이다. ‘이 몸으로 평생 밭농사 논농사 다 지었다’는 장의분 할머니(82)가 스트레칭을 마치고 “시원하다”며 다리를 쭉 뻗어 보였다.

민트씨가 근무하는 홍성 우리동네의원은 ‘홍성우리마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협동조합)’의 첫번째 사업소다. 의료협동조합은 지역 주민과 의료인이 주체가 돼 지역공동체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조’ 조직이다. 병원이 없는 홍동면에 ‘병원’이 생긴 데는 공중보건의료 복우하며 주민들과 인연을 맺은 이훈호 원장이 이곳에 남기로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원장과 주민들은 준비 과정에는 독서와 다큐멘터리 시청으로 스터디를 함께 하며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공유했다. 병원을 어디에 열지, 의료협동조합 조직에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지도 토론을 거쳐 정했다. 4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5월 325명이 출자한 의료협동조합이 꾸러졌고, 우리동네의원도 8월 개원했다. 본격적으로 병원 개원을 준비할 때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에 조합원들이 직접 팔을 걷어 붙였다.

②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일자리제공형 필수 요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단, 근로자가 1명인 경우 취약계층이어야 함)

$$\text{취약계층고용비율} = \frac{\text{고용 보험에 가입된 취약계층 근로자 수}}{\text{고용 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 수}} \times 100$$

■ 유의 사항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근로자대표를 제외한 임원은 유급근로자에서 제외
취약계층 의무 고용 비율(30%)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참은 일자리를 제공

* 관참은 일자리: ①최저임금 이상 지급②주 15시간 이상 근무③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의 취약계층의 범위에 따름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설립인가증, 정관, 현장실사를 통해 사실 확인

②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취약계층의 범위 및 증빙서류

구분	판단 기준	증빙 서류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1인</th> <th>2인</th> <th>3인</th> <th>4인</th> <th>5인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22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td> <td>2,863,976</td> <td>4,382,271</td> <td>6,390,485</td> <td>7,226,836</td> <td>7,678,032</td> </tr> <tr> <td>60%</td> <td>1,718,386</td> <td>2,629,363</td> <td>3,834,291</td> <td>4,336,102</td> <td>4,606,819</td> </tr> </tbody> </table>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2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2,863,976	4,382,271	6,390,485	7,226,836	7,678,032	60%	1,718,386	2,629,363	3,834,291	4,336,102	4,606,819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 소득금액 증명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2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2,863,976	4,382,271	6,390,485	7,226,836	7,678,032															
60%	1,718,386	2,629,363	3,834,291	4,336,102	4,606,819															
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2023년 기준 68년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 경회원증, 장애인단서(전문 의) 등																		
성매매피해자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 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93호, 2019.1.1)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 등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																		

②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구분	판단 기준	증빙 서류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결혼이민자 +자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범죄구조피해자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 6개월 이내 출소자, 소년원 퇴원자 • 보호관찰 청소년 • 노숙인 • 약물, 알코올, 도박 중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치료자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난민 • 보호종료아동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등

발그래사회적협동조합

- 장애인 고용을 통한 비누 제조 사업
- 장애인 직업체험 프로그램
- 장애인, 장애인 가족 여행 서비스

논산발그래일터, 발달장애인 일자리 및 친환경 제품

S생활 | 입력 2022-10-11 11:20:31 | 정의준 기자 | 0개



논산 지역 장애인보호작업장인 '논산발그래일터'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제공과 친환경 제품 보급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③ 혼합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혼합형 필수 요건**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함

- **유의 사항**

실적 인정과 관련한 산정 방식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20%)에게는 관철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한국상담교육사회적협동조합

-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 인성/진로교육, 집단상담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한국상담교육사회적기업 서비스 이용은 공유가치를 만들어 냅니다.

CVS 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은 사회문제를 분석
이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
가치를 동시에 창출을 말합니다



하나
경력단절여성지원
한국상담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진출 및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둘
정서적 사회문제 해결
한국상담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은 사회 각 계층의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심리상담사들과
노려하고 있습니다.



셋
건강한 공동체 형성
한국상담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은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④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가) 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의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or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의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나) 형 : 지역의 사회 문제 해결 유형

지역의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 다양한 지역 사회 문제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와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 설정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한 사업에 지출된 비용(매입액) 또는 수입(매출액)이 동기간 기업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 이상

- (다) 형 : 지역의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에 지출된 비용(매입액) 또는 수입(매출액)이 동기간 기업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 이상

④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유형별 유의 사항

▪ (가) 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지역 내 프로보노 활동,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자원 연계 가능
단, 지역 내에는 기업 본사만 있고, 실질적 생산 공장이나 영업 시장을 타 지역에 위치한 경우 불인정
사업 추진이 지역 사회 내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실확인서에 기술

▪ (나) 형 : 지역의 사회 문제 해결 유형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문제, 이에 대한 접근과 인식 이유 및 해결 방법 등이 구체적이어야 함
의제 설정 및 해결 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등 차별화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 (다) 형 : 지역의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말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성격에 맞는 컨설팅 기법을 개발, 적용하여 해당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 실적을 제출해야 함

(주)청그라미_지역사회공헌형(나)

-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 지역문제 해결하는 청년 지원(로컬사회혁신가 양성)
-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 청그라미 로컬 사회혁신 사업의 필요성

[그림] 충남 지역별 지역사회의 주요 의제



○ 충남은 낙후된 지역을 재생하고, 농촌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청년을 유입·정착시켜 새로운 융·복합 대안경제활동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한 지역문제임.

○ 이러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에서는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로컬크리에이팅, 청년당사자 조직 등의 다양한 사회혁신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충남지역에서 실제 사회혁신을 초기단계를 발굴하고,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매우 부족한 현실임.

○ 사회혁신 문제 해결방법중 하나인 임팩트 금융의 경우 2018년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 발표 이후 공공에서 임팩트 투자에 6천억 정도의 자금이 지원되면서, 임팩트 금융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정작 충남의 임팩트 금융은 매칭은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공급 생태계 역시 미흡한 실정임.

○ 이런 상황에서 뉴블랙, 임팩트 스캐어, MYSC, 사회연대은행, 오마이컴퍼니, 비플러스 등 임팩트 금융기관과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청그라미가 충남의 임팩트 매칭의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수행했으며, 향후 직접 공급기관으로 더욱 성장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각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교육콘텐츠 제공과 자금 지원을 통해 로컬사회혁신가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⑤ 창의·혁신형 : 사업 특성상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

■ 창의·혁신형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공정 무역 등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증이 가능

<예시>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고용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으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취약계층 편의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유·무형의 콘텐츠를 생산, 개발, 제공

(일반 영리기업과 차별성) 일반 영리기업과는 차별화된 요소를 가지고 사회문제 해결

(기타 지역사회 공헌 등) 기차 지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세부 기준

조직의 설립 취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 방식, 취약계층 참여 및 지원 정도, 지역 사회 기여 및 공헌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해당 유형으로 신청할 수 없음

기업의 주된 활동 이외의 실적 및 사회공헌 활동(지역 사회 기부 등)은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에 해당하지 않음

함께그린협동조합

- 탄소 중립, 제로웨이스트 사업
- 자원순환 활동가 양성
- 제로웨이스트샵 운영(불당동 꼭꼭가게)
- 못난이 농산물 활용 비건디저트 개발
- 친환경 테마 환경교육프로그램 등 친환경 교육상품 판매

함께그린협동조합, 생태교육 꿀따기(채밀) 프로그램 열어

📍 천안아산신문 | 🕒 승인 2022.05.31 08:44 | 💬 댓글 0

직접 키운 꿀 수확을 통해 벌의 중요성과 로컬푸드의 환경적 가치를 배운다

다가오는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기후 위기 속에 일상 속 탄소 중립 실천과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에 있는 함께그린협동조합은 생태 시민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 꿀따기(채밀)' 프로그램을 지난 28일에 진행하였다.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의 수행**

유급근로자의 고용과 매출이 발생은 필수 요건 아님 *사업자등록증은 필수

- **유의 사항**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 1인 이상 고용 및 매출 발생 필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정관에 명시해야 함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
 (정관 구성은 공고일 이전, 정관 공증은 접수마감일까지 완료해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유의 사항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배분 가능한 이윤은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

-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 고용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함

- *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일정비율을 사회적 목적을 재투자하도록 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손익계산서상 항목인 '당기순이익' 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적립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사업 관련 현행법 위반 시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 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적용 기준은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간 위반 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사회적기업 기본 과정, 노무 및 회계 관리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춰야 한다.

■ 정관 필수 기재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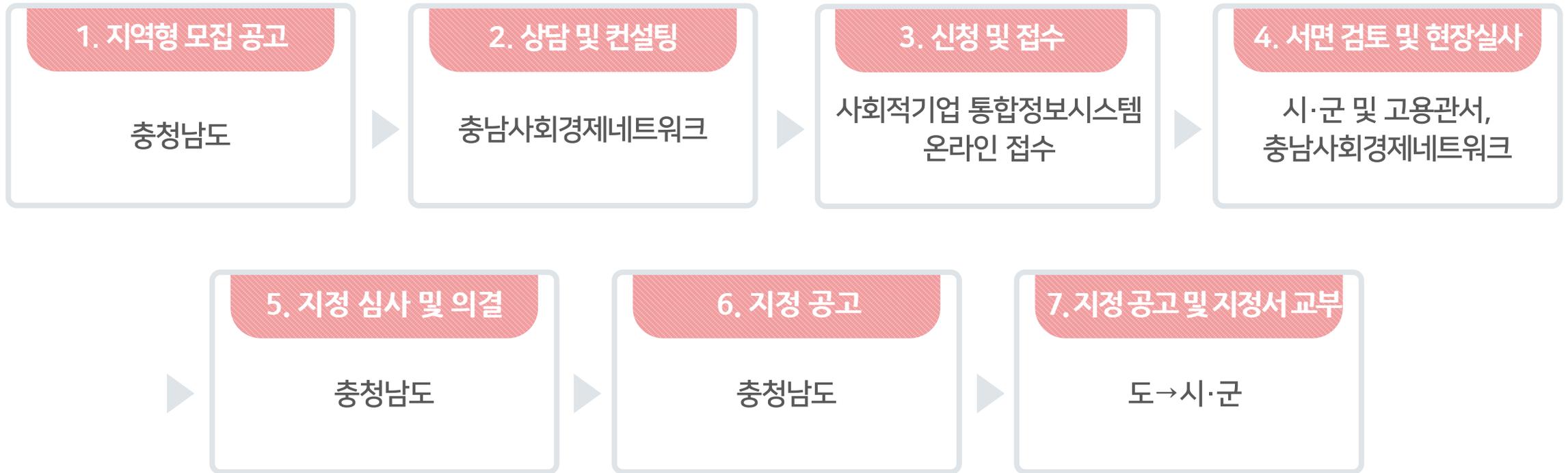
1. 목적 : 취약계층 일자리 혹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주된 사회적 목적을 명시
2. 사업내용 : 수익사업 및 목적사업의 세부 내용을 명시, 법인의 경우 사업 추가 시 정관 변경 및 등기 필요
3. 명칭 : 공식적 전체 명칭 기재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장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인증) : 의사결정기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명시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수익금사용, 이익배당 등의 사항 기재 및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조항 필수
7.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 : 주식, 조합원 출자 규정, 사업비 차입 또는 용자에 대한 규정 명시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채용 및 임면 관련 사항 명시,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고용지청 신고 필수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적 기금에 기부한다는 사항 명시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인의 지부, 재정 및 회계에 관련한 사항

■ 유의 사항

필수 사항이 기재된 정관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함(단, 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경우 공증 불필요)

03

심사내용 및 절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제한 사항

1) 2년 이내에 3회 이상 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 제한**

* 예시 : 21.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22.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23.3월까지 신청제한

2)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제한 사항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 4)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주요 심사내용

- 1)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2) 신청 기업이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3)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4)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준수 사항

- 1) 지정요건 유지
- 2)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지정 후 3개월 이내)
- 3)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 * 미 제출시 불이익 :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
- 4)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지정 취소 사유

1)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기 지원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

2)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한 경우

*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함

3)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4)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지시에 불응할 경우

04

구비서류 준비 방법

순번	제출 서류	비고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별지】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불 가) 등
4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실적이 있는 경우)	유형별 사실확인서 및 구비서류
5	유급근로자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해당 기업만)	고용보험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6	재무제표(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친 자료) 등 영업활동을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기업만)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 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등)
7	정관·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공증을 받아 제출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9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접수 마감일 1년 이내에 대표자 명의의 5시간 이상 교육과정 수료증
(1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05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문의전화 | 1661-4006
(070-4639-5084)

- 마이페이지
- 육성사업
- 인증신청
- 지정신청
- 재정지원
- 사업보고서/경영공시
- 경영컨설팅
- e-러닝
- 이용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사이트맵
 -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안내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알림마당
- 성장지원센터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원가입

맞춤형 서비스

주제별 서비스를 찾기 쉽게 묶음으로 안내합니다.

육성사업	인증신청	지정신청	재정지원	e-러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업참가 신청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참가 신청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현황 			

퀵메뉴

자주찾는 서비스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금신청



전문인력지원
지원금신청



사회보험료
신청



일자리창출
실적보고서



사업개발비
실적보고서



인증서
재발급



취약계층고용
비율확인서



e-러닝
수강신청



부정수급
상시제보

로그인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일반회원	지원기관	공무원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로그인 옵션		
<input type="checkbox"/> 공동인증서	<input type="checkbox"/> G-PIN	
<input type="checkbox"/> 아이핀	<input type="checkbox"/> GPKI	
<input type="checkbox"/> 인증서등록	<input type="checkbox"/> GPKI등록갱신	

지정공모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모한 지정 신청 공고

더보기 +

2021-02-25	2021-02-22	2021-02-16	2021-02-16	2021-02-15	2021-02-10
예비(부처형)	예비(지역형)	예비(지역형)	예비(지역형)	예비(지역형)	공모마감
여성가족부 2021년 01차 지정공	충청남도 2021년 01차 지정공	광주광역시 2021년 01차 지정공	인천광역시 2021년 01차 지정공	경기도 2021년 01차 지정공모	울산광역시 2021년 01차 지정공
공모시작일: 2021-02-25 공모종료일: 2021-03-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공모시작일: 2021-03-02 공모종료일: 2021-03-17 지역: 충청남도	공모시작일: 2021-02-16 공모종료일: 2021-03-02 지역: 광주광역시	공모시작일: 2021-02-22 공모종료일: 2021-03-08 지역: 인천광역시	공모시작일: 2021-02-17 공모종료일: 2021-03-02 지역: 경기도	공모시작일: 2021-02-10 공모종료일: 2021-02-25 지역: 울산광역시
자세히보기 →	자세히보기 →	자세히보기 →	자세히보기 →	자세히보기 →	자세히보기 →

1) 지정 신청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대표전화 : 1661-4006

- 마이페이지
- 육성사업
- 인증신청
- 지정신청** ①
 - 지정공고 게시판
 - 지정 신청내역
 - 지정 신청서 등록(지역형)** ②
 - 지정 신청서 등록(무지역)
 - 재정지원
 - 사업보고서/경영공시
 - 경영컨설팅
 - e-러닝
 - 이용안내
 - 알림마당
 - 성장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등록(지역형) > 지정 신청서 등록(지역형)

사업지역: 충청북도 | 공모년도/차수: 전체 | 전체

지정공고 목록 전체 1건

순번	년도	차수	사업지역	모집기간	신청상태
1	2020	02	충청북도	2020-07-31 09:00 - 2020-12-31 18:00	신청하기 ③

④ 지정신청서 유급근로자 명부

사회적기업 기본정보

관리번호	신청 시 자동부여	사회적기업유형 구분	예비(지역형)
사업지역/관할자치단체	충청북도 / 선택	공모(년도/차수)	2020 / 02
법인등록번호		지원기관	선택

2) 원클릭 구비서류 제출

원클릭 구비서류 간소화

www.one-click.co.kr

1 01 원클릭 구비서류 제출 사이트 열기
- 원클릭 구비서류 제출 사이트 열기 버튼 클릭 후 <원클릭 고객 서류제출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구비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02 원클릭 구비서류 가져오기
- 원클릭 구비서류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하신 구비서류가 자동 첨부됩니다.

1. 원클릭 구비서류 제출 사이트 열기 2. 원클릭 구비서류 가져오기

사업자등록증명	<input type="text"/>		
표준재무제표증명	<input type="text"/>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input type="text"/>		
부가세신고내역	<input type="text"/>		
거래처별합계표(매입/매출)	<input type="text"/>		
납세증명	<input type="text"/>		
4대보험 가입증명서(가입자명부)	<input type="text"/>		

2) 원클릭 구비서류제출

1) 메인 화면



✓시스템 공지사항, 브라우저 환경 및 매뉴얼/발급모듈 다운,
고객센터 연계 등은 하단의 버튼이미지를 눌러 확인 가능합니다



☎ 원클릭 고객센터 : 02-3771-1100

① 공인인증서 신규 등록

- 원클릭 서비스 최초 이용 시,
제출자 기본 정보 및 약관 동의 진행
- ① ▪ 최초 진입 시 서류발급을 위한
발급모듈 설치 가 진행됩니다 (필수)

② 기존 사용자 로그인

- 원클릭 서비스 이용이력 있는 경우,
기존 제출자 기본정보 불러와
인증서 비밀번호만 입력하여 서류제출 가능

2) 원클릭 구비 서류 제출

2) 로그인 (신규)

공인인증서 신규등록 X

1 STEP 01. 등록자 선택(필수)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2 STEP 02.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필수)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필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모두 동의합니다.

3 STEP 03. 제출자정보(필수) **STEP 04. 기관 담당자정보(선택)**

성명 전화번호(-없이) 휴대폰번호(-없이) 이메일

STEP 05. 공인인증서 인증정보(필수)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공인인증서는 홈택스, 위택스, 건강보험관리공단, 대법원에 등록된 인증서만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 기관별 공인인증서 등록하기 : 윤세원, 홈택스 | 위택스 | 건강보험관리공단 | 대법원

공인인증서 등록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로그인 가능!

① 인증서 등록자 선택

- 인증서 종류에 따라 등록자 선택 필수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인증서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대표자 인증서

※ 홈택스,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해당 인증서 등록필요

② 약관동의 및 제출관련 정보 작성

-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필수
- 제출자정보 작성 필수 : 제출자 식별 및 내역 확인 목적
- 기관 담당자정보 작성 선택 : 해당 연락처로 완료 문자/이메일 발송

③ 공인인증서 인증정보 작성

- 법인사업자 인증서 :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개인사업자 인증서 :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4) 제출완료 및 내역조회

oneclick | 서류제출 | 제출내역 조회

기업정보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한전력주식회사	홍길동	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	서울특별시 용구 세종로 123

제출서류 (대상: 15건)

제출서류	제출 기간	발급 상태	발급 사유
1. 사업계획서(제출) 1		적용완료	
2. 부속자료(제출)	2023-01 - 2023-12	적용완료	
3. 부가가치세과세자료(제출)	2023-01 - 2023-12	적용완료	
4. 납부내역(제출)	2023-12 - 2023-12	적용완료	
5. 납세증명		적용완료	
6. 사업계획서(제출(영문))		적용완료	
7. 4차산업		적용완료	
8. 지원내역(제출)		적용완료	

100% 진행 15건 중 15건 발급완료

버튼 클릭 한번으로 모든 서류 제출!

서류 제출 완료

서류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NDC(한국정보-공통상표)

8건	0건	7건
제출서류	발급불가(영기)	미지급

서류	제출 여부
1. 사업계획서(제출)	적용완료
2. 부속자료(제출)	적용완료
3. 부가가치세과세자료(제출)	적용완료
4. 납부내역(제출)	적용완료
5. 납세증명	적용완료

기관 담당자정보 (1건)

담당자번호	이재철
담당자 연락처 (영기)	이재철
담당자 이메일 (영기)	이재철@대한전력(영기)

닫기 | 제출내역 조회로 이동

① 발급상태 확인

- 서류별 발급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 프로그레스바를 통해 전체 진행률 확인

② 제출완료 및 내역조회

- 전체 서류 건 별 제출 현황 확인 가능 (은행 담당자 정보 입력 시 완료내역 발송)
- 제출내역 조회 페이지에서 발급서류 이력 및 원본 내용 확인 가능

oneclick | 기업정보 | 제출내역 조회

제출내역 조회

제출서류	제출 기간	발급 상태	발급 사유
1. 사업계획서(제출)		적용완료	
2. 부속자료(제출)	2023-01 - 2023-12	적용완료	
3. 부가가치세과세자료(제출)	2023-01 - 2023-12	적용완료	
4. 납부내역(제출)	2023-12 - 2023-12	적용완료	
5. 납세증명		적용완료	
6. 사업계획서(제출(영문))		적용완료	
7. 4차산업		적용완료	
8. 지원내역(제출)		적용완료	

2) 원클릭 구비서류 제출

육성사업
인증신청
지정신청
지정공모 게시판
지정 신청내역
지정 신청서 등록(지역형)
지정 신청서 등록(부처형)
재정지원
사업보고서/경영공시
경영컨설팅
e-러닝
이용안내
알림마당
성장지원센터

원클릭 구비서류 간소화

제출순서

01 원클릭 구비서류 제출 사이트 열기

- 원클릭 구비서류 제출 사이트 열기 버튼 클릭 후 <원클릭 고객 서류제출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구비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02 원클릭 구비서류 가져오기

- 원클릭 구비서류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하신 구비서류가 자동 첨부됩니다.

1. 원클릭 구비서류 제출 사이트 열기

2. 원클릭 구비서류 가져오기

사업자등록증명	<input type="text"/>		
표준재무제표증명	<input type="text"/>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input type="text"/>		
부가세신고내역	<input type="text"/>		
거래처별합계표(매입/매출)	<input type="text"/>		
납세증명	<input type="text"/>		
4대보험 가입증명서(가입자명부)	<input type="text"/>		
4대보험 완납증명서	<input type="text"/>		

임시저장

신청서 제출

3) 유급근로자 명부 작성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대표전화 | 1661-4006

- 마이페이지
- 육성사업
- 인증신청
- 지정신청
 - 지정공고 게시판
 - 지정 신청내역
 - 지정 신청서 등록(지역형)
 - 지정 신청서 등록(부처형)
- 재정지원
- 사업보고서/결명공시
- 경영컨설팅
- e-러닝
- 이용안내
- 알림마당
- 성장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등록(지역형)

지정신청 > 지정신청서 등록(지역형)

지정공고 목록 전체 1건

자율경영공시 서식 다운로드 5건 적용

순번	년도	차수	사업지역	모집기간	신청상태
1	2020	02	충청북도	2020-07-31 09:00 ~ 2020-12-31 18:00	신청하기

지정신청서 유급근로자 명부

유급근로자 목록 전체 5건 유급근로자가 있는 기업만 작성합니다.

추가 삭제 역설 업로드

No	근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위탁계종유형	고용보험 가입여부	업시일	주 근로시간 (시간)	월 임금액 (원)	고용형태	직종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영시지장 신청서 제출

05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안내

4) 지정 신청내역 확인

☎ 대표전화 | 1661-4006

- > 마이페이지
- > 육성사업
- > 인증신청
- > 지정신청
- > 지정 신청내역
- > 지정 신청서 등록(지역별)
- > 지정 신청서 등록(부처별)
- > 재정지원
- > 사업보고서/결영공시
- > 경영컨설팅
- > e-러닝
- > 이윤안내
- > 알림마당
- > 성장지원센터

☰ ☱ ☲ ☳ ☴ ☵ ☶ ☷

☛ > 지정신청 > 지정 신청내역

지정 신청내역

지정 신청서에 대한 기존의 접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진행상태가 '심사'가 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수정 및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정보

기업명	(주)누리물리과학기술	대표자명	오동식	사업자등록번호	3018607201
(대내)사회적기업 구분	인공반납	지정번호		지정서발급일	

지정 신청서 목록 전체 3건

번호	신규/변경	신청일	사회적기업유형	사업지역	년도	차수	접수방법	진행상태(변경)	③ 신청상태	최종수정일 (변경)	변경사항	지정서 발급
1	신규	2020-12-17	예비지역형	충청북도	2020	2	온라인	작성중	입사제정	2020-12-17		
2	신규	2020-12-12	예비(부처형)	충청북도	2020	2	온라인	접수	상세보기	2020-12-17		
3	신규	2020-12-12	예비(부처형)	충청북도	2020	3	온라인	접수	상세보기	2020-12-14		

06

접수기간 및 문의

- ◆ 접수 기간 : 2023. 6. 14.(수) ~ 07. 05.(수) 18:00까지
-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 에서 접수
모든 서류 PDF 변환 등록
- ◆ 온라인 신청 방법 문의: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1661-4006)

①기업회원가입

②지정공모선택

③신청서작성

④사업계획서등서식다운후작성및첨부(PDF)

⑤기타증빙서류첨부

06 접수 기간 및 방법

▶ 문의처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이동근 주무관(☎ 041-635-2214)
 신청접수 및 지정상담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및 시·군 담당부서 문의

▶ 상담 문의 : 권역별 지원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통합지원실	(041) 415-2012(내선 1번)

▶ 접수 문의 : 시군 담당 부서

시·군	부서	전화번호	시·군	부서	전화번호
천안시	일자리정책과	(041) 521-5612	금산군	경제과	(041) 750-3022
공주시	지역활력과	(041) 840-8598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 830-2264
보령시	새마을공동체과	(041) 930-2333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 950-4126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041) 540-2871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 940-4074
서산시	일자리공동체과	(041) 660-2590	홍성군	경제과	(041) 630-1355
논산시	지역경제과	(041) 746-6028	예산군	경제과	(041) 339-7283
계룡시	경제산업과	(042) 840-2502	태안군	주민공동체과	(041) 670-6163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041) 350-3187			

QnA



고맙습니다

문의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통합지원실

☎ 041-415-2012 (내선 1번)

주소: 충남 아산시 변영로 86번길 27-3 4층 401호

홈페이지 : www.sechungnam.org

E-mail: cnse1212@gmail.com

본 자료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